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(약칭: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)

[시행 2024. 8. 28.] [대통령령 제34863호, 2024. 8. 27., 일부개정]

금융위원회 (금융안전과) 02-2100-2974 경찰청 (경제범죄수사과) 02-3150-3442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7. 28.>
- 제2조(금융회사의 범위)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파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7. 28.>
 - 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
 - 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
- **제2조의2(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)**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 - 1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・추진
 - 2.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

[본조신설 2014. 7. 28.]

- 제2조의3(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)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(이하 "본 인확인조치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.
 - 1.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(휴대전화를 포함한다)를 이용하는 방법
 - 2. 이용자와 대면(對面)하여 확인하는 방법
 - 3.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
 -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 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·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16. 7. 26.>
 - 1.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2.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 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
 - 3.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 - 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.
 - 1. 저축성 보험・공제(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・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・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・공제를 말한다)
 - 2.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 융상품

[본조신설 2014. 7. 28.]

- 제2조의4(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)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"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.
 - 1.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(이하 "피해의심거래계좌"라 한다)로 이용되는 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"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"이라 한다)의 구축・운영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
-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.
- 1. 마이크로필름
- 2.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
- 3.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
- 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·해제 및 본인확인 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 8. 27.]

- 제2조의5(금융거래의 목적 확인)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, 팩스,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4. 8. 27.]
- 제2조의6(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2조의7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센터장 1명을 두며,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.
 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・감독한다.
 -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(이하 "관계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「통신비밀보호법」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 [본조신설 2024. 8. 27.]
- **제2조의7(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)**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 - 1.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등과의 협력
 - 2.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[본조신설 2024. 8. 27.]
- **제2조의8(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)**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 사유,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한다.

[본조신설 2024. 8. 27.]

- **제3조(피해구제의 신청)**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연락처·주소,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7. 28., 2016. 7. 26.>
 -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<신설 2016. 7. 26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 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6. 7. 26.>
- 제3조의2(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)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(수사기관용)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, 사기이용계좌 번호, 피해내역,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.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
 -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·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
 -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1. 7.]

- 제4조(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)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·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 11. 7.>
 - 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: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 지요청서(금융회사용)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
 - 2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: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(금융회사용)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·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4. 7. 28., 2023. 11. 7.>
 - 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 간 내에 제출
 - 가.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: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
 - 나.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: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
 - 2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
 - 가.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(금융회사용)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서류 사본: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
 - 나.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·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: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
 -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23. 11. 7.> [제목개정 2023. 11. 7.]
- **제5조(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)**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(元帳)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11. 17.>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지급정지의 일시,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
- 2.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,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
- 3.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
- 4.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요청에 관한 사항
- ③ 삭제<2014. 7. 28.>
- 제6조(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)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(이하 "채권소멸절차"라 한다)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서류를 첨부하여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(이하 "금융감독원"이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4. 7. 28, 2023. 11. 7.>
 - 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 - 가.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
 - 나.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
 - 다.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
 - 2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 - 가.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
 - 나.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 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
 - 다.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
 - 라.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
 -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만원을 말한다.<신설 2020. 11. 17.>
 -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11. 17.>
- 제7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)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 - 2.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

[제목개정 2014. 7. 28.]

- **제8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**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6. 7. 26., 2020. 11. 17., 2023. 11. 7., 2024. 8. 27.>
 - 1.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
 - 1의2.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
 - 2.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. 다만,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가. 법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
 - 나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
 - 3.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
 - 4. 수사기관이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5.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확인의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에 한 경우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, 7, 26.>
-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<신설 2023. 11. 7.>
-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 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.<개정 2014. 7. 28., 2023. 11. 7.>
- 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7. 26., 2023. 11. 7.>

[제목개정 2014. 7. 28.]

- **제9조(피해환급금의 지급 등)**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.
- **제10조(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)**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제10조의2(이의신청의 절차 등)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제공중지요청기관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, 주소 및 연락처
 - 2. 이의신청의 사유
 - 3.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
 -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 -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6. 7. 26.]

제10조의3(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)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,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11. 17.]

- 제11조(수수료)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. 다만,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7. 28.>
 -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,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1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7. 28., 2014. 8. 6.>
 - 1.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,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
 - 4.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 · 지급에 관한 사무
 - 5.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
 - 6. 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관한 사무
 - 7.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무
 - 8.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
 -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」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8. 6.>

[본조신설 2012. 1. 6.]

- 제11조의3(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)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
 - ②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·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
 -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 · 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.
 - 1.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
 - 2.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 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
 - 3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

[본조신설 2024. 8. 27.]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 <제34863호,2024. 8. 27.>

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